

(국민의힘, 용산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66㎡ 이상의 교실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44㎡ 이상
의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나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한 유연한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관내 학교의 특수학급 수용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교실 면적 부족은 특수학급 확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66㎡ 이상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44㎡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6㎡ 이상의 여유 교실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4㎡ 이상의 교실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5조제3항).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원활히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수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